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발 의 자 : 최민규 의원(찬성자 : 23명)
- 나. 의안번호 : 제 3432 호
- 다. 발의일자 : 2026. 2. 9.
- 라. 회부일자 : 2026. 2. 12.

2. 제안이유

-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맨홀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일시적인 정책 대응을 넘어 명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를 중심으로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제7조의 제목을 (하수관로

준설 등)에서 (하수관로 점검 등)으로 변경함(안 제7조 제목).

- 나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, 그 외 침수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도 설치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제3항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6조

나. 예산조치 : 원안 참조

다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6. 2. 20.~ 2. 24.) 결과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■ 개요

- 본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맨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를 중심으로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[표 1] 신·구조문 대비표(안 제7조)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하수관로 <u>준설</u> 등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7조(하수관로 <u>점검</u>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관리청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6조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서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맨홀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내수재해 위험지구가 아닌 경우에도 침수의 위험이 있거나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■ 서울시 관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

- 서울시는 지난 '22년 강남역 일대 침수 사고 당시 하수도 맨홀 뚜껑 이탈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했었던 점을 감안해 재발방지를 위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¹⁾해 오고 있음.
- '25.12월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맨홀 291,684개 중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된 개소는 총 59,737개이고, 아래 [표]와 같이 매년

1) 맨홀추락방지시설 표준(안) 검토 보고, 물재생계획과-32057, 2022.12.1.

설치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.

[표 2]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

(’25.12월 기준)

구분	설치 실적					전 체 설치현황
	소계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
25개 자치구	59,737	6,727	8,075	15,106	29,829	291,684

- 특히, 본 개정안의 대상지역인 내수재해 위험지구²⁾(총 138개소)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(’22~’25)을 통해 설치를 완료하였고,

[표 3]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 추진현황

구 분	1단계(’22~’25년)	2단계(’26년)
설치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내수재해 위험(40개소) 및 관리지구(98개소) ◦저지대 등 일반지역 ※ 설치대상 : 53,233개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하천재해 위험(45개소) 및 관리지구(30개소) ◦침수위험지구(1개소)1) ※ 설치대상 : 10,028개소

- ’26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에서는 하천재해 위험지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, 자치구별 취약지역 추가 조사를 통해 저지대 일반지역까지 단계적으로 설치 범위를 넓혀갈 계획³⁾임.

■ 주요골자별 검토의견

- 안 제7조 제목은 ‘하수관로 준설 등’을 ‘하수관로 점검 등’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,
 - “준설”이 하수관로 내 퇴적물 제거 등 기능 유지에 국한된 개념이

2) 극한 강우 시 빗물 처리 시설 용량 초과나 고장으로 도시 지역이 침수될 우려가 있는 곳으로, 자연재해저감 종합 계획 세부수립기준(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-89호, 2024.11.21.)에 따라 선정함.

3) 2026년 맨홀추락방지시설 사업계획 보고, 물재생계획과-13215, 2025.8.7.

라면, “점검”은 하수관로의 구조적 안전성과 맨홀 등 부속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포괄적 개념인바, 하수관로 관리의 방점을 ‘기능 유지’에서 ‘시민 안전’으로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판단됨.

- 특히, 안 제7조제3항에서 내수재해 위험지구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제목 변경을 통해 하수관로 관리의 범위를 부속 안전시설물까지 포함하도록 정비하는 것은 조례 내 조문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.
- 다음으로, 안 제7조제3항의 신설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6조4)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상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맨홀에 대하여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, 그 외 침수 우려 지역 등에도 필요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- '22년 강남역 일대 맨홀 사고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집중호우 시 수압에 의한 맨홀 뚜껑 이탈 사고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고,
 - 서울시가 이미 '22년부터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본 개정안은 그 법적

4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6조(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) ① 시장(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, 제16조의2,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)·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·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(이하 “시·군 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·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·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·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(이하 “시·도 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

③ - ⑥ (생략)

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시
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됨.

- 다만,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내구성과 안전 성능에 대한 통일된 기
준이 미비할 경우 실제 수압 발생 시 시설이 파손되는 등 안전 문
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
 - 서울시 차원의 표준 규격과 성능 인증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엄격히
적용하고, 자치구가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예산 집행의
효율성과 시설의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.